

서울특별시 사회투자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1. 회부경위

- 가. 의안번호 : 제2891호
- 나. 제 안 자 : 서울특별시장
- 다. 제안일자 : 2021년 10월 15일
- 라. 회부일자 : 2021년 10월 20일

2. 제안이유

- 가. 사회투자기금 투융자 지원을 통해 일반 금융권 이용이 어려운 사회적 경제기업 성장과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 등 다양한 사회적 가치 창출이 가능하며,
- 나. 코로나 19와 같은 위기상황에서는 경영이 어려운 피해기업과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고용취약노동자들의 위기극복에 기여하고 있는 바, 존속기한 연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3. 주요내용

- 서울특별시 사회투자기금의 존속기한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함(안 제11조).

4. 검토의견 (수석전문위원 강상원)

가. 개정안의 개요

-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¹⁾에 따라 만료가 도래하는 사회투자기금의 존속기한(2021.12.31.)을 5년간 연장(2026.12.31.) 하기 위해 제출되었음.

나. 사회투자기금의 조성 및 운용 현황

- 서울시는 사회적가치 실현과 좋은 일자리 창출을 목적으로 2012년 사회투자기금(이하 “기금”)을 설치하고 관내 사회적기업에 대한 투·융자를 지원하고 있음.
- 2021년 기금의 총 조성규모는 827억 1천 2백만원으로, 연도말 조성액 8억 5천 4백만원, 융자금 미회수 채권 818억 5천 8백만원임.

1)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기금의 존속기한) ① 지방자치단체가 기금을 신설하여 운용하려는 경우에는 기금의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운용되는 기금과 「지방공기업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지역개발을 위한 기금은 존속기한을 명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기금의 존속기한은 기금의 설치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으로 설정하여야 하며, 그 기간은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존속기한을 넘어서까지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5년의 범위에서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재정법」 제33조제9항에 따른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의 존속기한 및 통합·폐지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한 5년 단위의 기금정비계획을 매년 작성하여 이를 「지방재정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중기 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 사회투자기금 총 조성 규모 >

(단위 : 백만원)

총 조성규모 ㉔=㉑+㉒	2020년도말 조성액 ㉑	융자금 미회수 채권 ㉒
82,712	854	81,858

- 기금운용규모는 201억 5천 4백만원으로, 사회적기업과 고용취약계층 등에 대한 융자성 사업 175억원, 사회적금융지원과 임팩트투자조합 출자 등의 비융자성 사업 17억 8천만원, 예치금 8억 5천 4백만원임.

< 사회투자기금 사업내용 >

구 분		사업내용
융자성 사업	사회적경제기업 융자	<사회적경제기업 및 사회적투자사업 융자> 서울 소재 사회적경제기업 운영자금 등 또는 서울시 내 사회적가치를 창출하는 프로젝트 대상 융자 <우수사회적경제기업 융자> 일자리 창출 등 사회적가치창출 효과가 높은 우수 사회적기업을 대상으로 운영자금 융자
	소셜하우징 융자	서울시 내 사회주택을 공급중이거나 공급예정인 사회적경제주체 대상 공사비 등을 융자 지원
	민간자산클러스터 조성	민간자산을 활용하여 사회적경제 공동체 소유의 사무, 주거, 커뮤니티공간 및 협업화 사업 추진 등을 위한 클러스터 공간 조성시 장기·저리 융자 지원
	고용취약계층 융자	사회적경제기업·비영리민간단체에 종사하는 개인을 대상으로 긴급생계비 등 소액 융자지원 특수고용, 프리랜서, 플랫폼 노동자 등 불안정고용 노동자를 대상으로 긴급 생계비 및 자재구입비 등 소액 융자 지원
비융자성 사업	임팩트투자조합 출자	사회적경제기업 대상 임팩트투자조합 출자
	사회적금융기관 지원	사회적금융활성화를 위한 사업보조(융자금액의 2%)
	소셜벤처허브센터 운영	소셜벤처허브센터 임대료 지급(캠프 기부금)

- 융자성 사업은 민간 사회적 금융기관을 사업수행기관으로 선정하여 무이자로 기금을 융자하면, 기금과 민간자금을 매칭(1:1~5:1)한 후 사회적경제기업에 재융자하는 구조로 운용되고 있음.

- 비용자성 사업은 ▶ 정부모태펀드, 민간투자기관과 함께 임팩트투자 조합에 투자하는 사업, ▶ 융자사업비의 2%를 연동하여 수행기관의 채용자기업 대상 컨설팅 비용 등을 보조하는 사회적금융기관 지원 사업, ▶ 소셜벤처허브센터의 임대료를 지급하는 사업으로 구성됨.
- 기금은 2020년까지 총 1,485억 5천 2백만원의 자금으로 925건의 사회적경제기업과 236명의 사회적경제기업 종사자를 지원했음.

< 사회투자기금 융자지원 실적 >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융 자 금 액	합계	148,552	21,123	9,348	15,954	21,331	13,356	18,171	19,257	27,512
	市 기금 (市 수행관)	114,984	10,900	7,488	14,612	20,664	12,350	11,100	15,850	22,020
	민간기금	33,568	10,223	1,860	1,342	667	3,472	5,105	5,407	5,492
지 원 건 수	기업융자 (단위: 건)	925	59	44	81	65	170	137	127	242
	개인융자 (단위: 명)	236	-	-	-	-	-	-	-	236

다. 기금 존속기한 연장에 대한 판단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은 기금 운용의 효율화와 무분별한 기금 설치를 제한하기 위해 5년 이내에서 기금 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으로 존속기한을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사회투자기금은 조례 제정(2012.7.30.) 이후 존속기한을 1차례 연장(2016.9.29.)한 바 있음.
- 기금의 존속기한 연장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당초 설정된 기금 설치 목적의 달성 여부, 일반회계가 아닌 기금으로 사업을 추진해야 할

필요성, 재정적 측면에서의 기금 안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사회투자기금은 이윤창출보다는 사회적가치를 중시하여 일반기업에 비해 열악한 재무구조를 가진 사회적경제기업에게 민간금융기관보다 저리로 용자를 제공할 수 있는 대표적인 공공자금으로, ‘사회구성원 공동의 삶의 질 향상과 복리 증진 및 좋은 일자리 창출’이라는 기금의 설치 목적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임.
- 또한, 사회적 경제기업에게 안정적인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서는 「지방재정법」 상의 일반적인 제약을 받는 일반회계보다는 자율적·탄력적 운용이 가능한 기금을 통한 투·용자 지원이 적절한 것으로 판단됨.
- 다만, 기금 설치 초기에 기업신용도 평가자료가 없거나 미흡한 기업까지 용자를 지원한 결과, 용자기업의 경영악화, 파산, 회생 등으로 인해 회수가 어려운 채권이 발생²⁾하고 있는 바, 기금운용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해야할 것임.
- 한편, 2022년도 서울시 예산안에서 사회투자기금의 서울시 전출금을 편성하지 않아³⁾ 기금운용 규모의 축소가 예상되므로, 사회적경제기업에 미칠 파급력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전출규모를 조정할 필요가 있음.

2) 경영악화 5개 기업, 폐업 2개 기업, 유동성 악화 1개 기업으로 회수가 어려운 채권총액은 1,586,817천원임(서울시 별도 제출자료)

3) 서울시는 기존 용자의 회수기간이 도래하고, 사회주택 지원 사업의 종료로 주택정책실의 사회투자기금 전출금도 미편성됨에 따라 추가적인 전출금을 편성하지 않았음.

담당 조사관	연락처
최범준	02-2180-8058

[참고자료]

< 서울시 사회투자기금 미회수/지연 내역 >

(단위 : 천원, 2021.9월 말 기준)

기업명	융자액	상환금액	연체금액	지연사유
총 계	3,664,000	1,240,183	1,586,817	
드로우주택협동조합	585,000	67,388	517,612	경영악화
오르그닷	200,000	88,333	111,667	개인파산 및 폐업
협동조합온리	180,000	101,012	78,988	경영악화
일상예술창작센터	1,500,000	448,000	215,000	현금흐름악화
한국택시협동조합	1,000,000	503,314	496,686	경영악화
(주)네오엑세스	100,000	12,500	87,500	경영악화
(주)북테크	27,000	-	27,000	경영악화
(주)에코그린	72,000	19,636	52,364	폐업